

『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8명

2. 제안이유

- 거리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
-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을 통하여 지역 문화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 및 거리예술가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거리예술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예술 활동기준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, 제5조,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0. 2. 17. ~ 2. 24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 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함께 예술진흥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거리예술가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활동을 장려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의 건전한 거리예술문화를 정착시키고,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.
- 자유로운 표현력과 다양성을 지닌 거리예술은 관객과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성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효과가 클 뿐 아니라, 거리예술을 통해 청년 및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도전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타 응용예술이나 문화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거리예술 활성화사업의 안정적·지속적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다만, 거리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소음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자칫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, 무분별한 거리예술 활동으로 인한 각종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거리예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